

□ 이전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 대학 또는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서, 우리 공단 지원자는 강원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 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공고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증빙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학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우리 공단은 강원도)에 소재한 소정의 학교로 하며,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음

- ①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 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 대학은 제외), 기술 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제24조에 따른 분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 (이원화 캠퍼스)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분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 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는 제외

□ 이전지역인재

이전지역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②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③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이전지역인재 해당여부 예시

〈본교의 위치와 분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
분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분교·지방캠퍼스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
분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강원) 대학 졸업(예정) : 해당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